

선상투표신고 안내

2024. 4. 10.(수)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신고기간** : 2024. 3. 19.(화) ~ 3. 23.(토) (5일간)

□ **신고서 배부처** : 소속 선박회사 및 관할 구·시·군청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※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nec.go.kr>)의 「자료공간」 메뉴의 「각종서식」에서도 출력가능

□ **신고대상** :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

선상투표 대상선박
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-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-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

□ 신고서 작성 및 발송시 유의사항

○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“**확인란**”에는 선박소유자,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며, “**신고인란**”에는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
○ **승선 예정 선원**(서면 신고)

-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·시·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합니다.
-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상투표신고 마감일(2024년 3월 23일)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.

○ **승선하고 있는 선원**(팩시밀리 신고)

-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일반팩스 및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·시·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(2024년 3월 23일)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.

☞ (전자팩스 이용 신고방법) ①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(shipvote@nec.go.kr)로 메일 발송, ②가입승인답변메일 수신 확인, ③선상투표홈페이지(<https://www.shipvote.go.kr>)에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「선상투표신고」 버튼 클릭
⇒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는 선박회사 및 선박의 메일로 별도 배부

- 신고서가 잘못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·시·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, 선박명,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

※ 승선 예정 및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구·시·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